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2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신성범·박정하·조은희

이만희 • 김승수 • 박대출

김종양 · 정희용 · 박준태

신동욱 • 유상범 • 조배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 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34조제4항 중 "제22조제2항"을 "제22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	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		
항 등) ① (생 략)	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		
	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 위하		
	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		
	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		
	포함한다) 또는 그 밖에 나이를		
	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		
	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		
	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		
	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		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제34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	제3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		
	<u>수</u>)		
④ <u>제22조제2항</u> 의 규정을 위반	④ <u>제22조제3항</u>		
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			
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	